

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관련 설명자료

1.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이 적용되는 대상은?

- 「식품위생법」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이 대상임

2.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의 전년도 건강진단 검진일이 3월 31일인 경우 언제까지 건강진단을 받으면 되나요?

-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에 따라 건강진단 검진일이 2월 17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도래한 대상자는 1개월 연장됨
 - * (예시) 2019년 검진일이 2월17일인 경우, 2020년3월16일까지 건강진단 실시
 - 2019년 검진일이 3월31일인 경우, 2020년4월30일까지 건강진단 실시
- 참고로,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을 지방식약청,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 2월 24일 시달하였음

3. 전년도 건강진단 검진일이 4월 1일인 경우는 어떻게?

-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은 2019년도 건강검진일 기준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적용됨
-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임